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 변경 결정안

- 거침도~김포간 해안도로 및 금곡동 광장 -

2010. 6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 변경 결정안

의안 번호	1069
----------	------

제출연월일 : 2010. 06.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청

1. 제안이유

- 점단·강화 편입 및 도시세력권 확장에 따른 지역간 교통량 증가로 인해 우리시 서북부 지역의 정체가 심화되거 있음
- 또한 남북가로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인아랫길사업으로 인한 지역단절, 점단신도시 등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강화~인천간 최단거리인 안암유수지앞 해안도로를 현재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아울러 금곡동 국지도84호선과 금곡동~김포시계간 도로의 교차지점에 광장을 신설하여 통행수요에 대비

2. 주요내용

<도시계획시설(선형시설)>

- 도로 : 폭원조정
- 중로1-141호선 : 총연장 13,723m중 2,800m구간, 폭원 20~60m→20~38m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 광장 : 신설
- 광장(교차점광장 87호) : 신설 202,878㎡(광2-4호선, 광2-24호선 교차지점)
- 녹지 : 면적조정
- 완충녹지(1호) : 변경, 49,600→47,918㎡(감 1,682㎡)
- 완충녹지(2호) : 변경, 26,000→26,453㎡(증 453㎡)

3. 입안내용

○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기경	중로	1	141	20~60	주간선 도로	13,723	중2-135	서측 행정구역계	일반 도로		인고182호 00.10.14	
변경	중로	1	141	20~38	주간선 도로	13,723	중2-135	서측 행정구역계	일반 도로			

○ 도시관리계획(시설: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87	광장	교통광장 (교차점 광장)	서구 금곡동 323-10일원 (광2-4, 광3-24 교차지점)	-	202,878	202,878		

○ 도시관리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서구 금곡동	49,600	감) 1,682	47,918	인고118 98.6.12	
변경	2	녹지	완충녹지	서구 금곡동	26,000	증) 453	26,453	인고118 98.6.12	

4. 입안사유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중로 2류 141호선	중로 1류 141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원조정 - 연장: 2,800m - 폭원: 20~60→20~38m 	김포시계~거침도간 상하행 분리운영 구간의 관계기관(매립지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협의 의견 및 우수지 펌프장 등 기존시설물을 고려 현지여건에 맞도록 폭원합병 조정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7	교통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장신설 - 위치 : 서구 금곡동 323-10일원(광2-4, 광3-24호선 교차지점) - 면적 : 202,878㎡ 	광2-4호선과 광3-24호선 교차에 따른 교통처리를 위한 광장 신설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완충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 및 면적조정 - 위치 : 금곡동 87호광장 우측변 - 면적 : 49,600→47,918㎡(감 1,682㎡) 	광2-4호선과 광3-24호선 교차점상 교통광장 신설에 따라 위치 및 면적 변경
2	완충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 및 면적조정 - 위치 : 금곡동 87호광장 좌측변 - 면적 : 26,000→26,453㎡(증 453㎡) 	광2-4호선과 광3-24호선 교차점상 교통광장 신설에 따라 위치 및 면적 변경

5. 추진경위

- 2000. 10. 14 : 도시관리계획 결정(중1-141호선)
- 2009. 10. 19 : 도시관리계획 입안
- 2009. 11. 06 : 환경성검토협의회 구성 및 의견수렴
- 2009. 11. 26 : 관계부서 및 기관 협의
- 2009. 11. 30 : 도시관리계획 및 사전환경성검토서 주민공람
- 2010. 1. 28 : 농지분야 협의(농림수산식품부 : 부분동의)
 - 도로 이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농지편입은 부동의
- 2010. 3. 10 : 도시관리계획 재입안
- 2010. 3. 16 : 관계부서 협의
- 2010. 3. 22 : 도시관리계획 및 사전환경성검토서 주민공람
- 2010. 4. 13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완료
- 2010. 5. 04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6.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결과

관련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의견	비고
소방안전본부 재난관리과	<p>[광장만 협의대상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양안전대책본부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중점검토항목의 도시관리계획 분야 추가 검토항목을 수록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내용에 따라 추가 검토 예정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 및 구거 등의 관련자료 및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유역의 단절로 인한 가옥 및 농지의 침수 여부를 검토하고 대책을 제시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별 검토 예정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조사를 토대로 한 해당지역의 하천, 호우, 사면, 지반재해 등 재해영향을 예측하고 검토지역 내에서의 재해분석 범위를 정하고, 재해가 예상되는 이유를 도출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계획의 적정성이 검토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조사를 토대로 재해 저감방안을 검토 하겠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노선 전 구간에 대한 구거 등을 조사하고 유역분할로 인한 우수배제 계획 등 홍수시 인근 지역의 침수 등 재해영향을 검토하고, 인공사면 발생여부 및 인근 하천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도출하여 저감방안을 제시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수시 인근지역 재해영향 및 인공사면과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하겠음 	반영

7. 관계부서 의견

관련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의견	비고
회계계약심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은 군·구에 재위임 되었으므로 군·구와 협의 시유재산은 행정재산으로 소관 부서와 협의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은 해당 군·구와 협의하겠음 재산 소관부서별로 협의하겠음 	반영
농식품유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 협의건은 농업진흥지역내 농지 1ha 이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 요청 바람 농림수산식품부 소유 국유재산은 농지개량시설로 사업시행전 시설물관리자와 협의하여 용도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대체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협의완료 농림수산식품부 소유 국유재산은 없으나 향후 신규발견시 별도 협의하겠음 	<p>완료</p> <p>반영</p>
건설심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유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신청, 사용수익허가 및 국토해양부 소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무상양도는 해당구청 소관업무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귀속됨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됨 준공후 재산이관 토지에 대하여 합병, 분할, 지목변경, 공유지분, 용도폐지 여부 등이 확인된 후 재산이관 되어야 하므로 준공전 무상귀속 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지적정리후 세목 정리한 공공시설 조서 및 측량도(현황+지적+도시계획), 현황사진 등을 첨부하여 협의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시행시 관련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음 - 사업시행시 관련절차에 따라 처리 	<p>반영</p> <p>-</p> <p>반영</p>

관련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의견	비고
건설심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건설업체의 원도급49% 이상 및 하도급, 인력, 자재, 장비가 60%이상 참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시행시 검토 하겠음 	반영
물관리과	<p>[하수시설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수도법」(개정2007.09.28)에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 하수도시설의 계획 및 설계·시공시에는 「하수도시설기준」, 「하수도시설설치사업무처리일반지침」,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보고서」,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등을 적용하고 동 기준 및 지침 등이 변경 될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여함 공공하수도 설치 등 관련사항은 공공하수도 관리청(서구청)과 협의 할 것 <p>[오수분야 및 지하수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 시 오수 발생량 및 처리 대책을 강구 할 것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시 사전에 해당 구청에 신고 할 것 방치공에 대한 실태파악과 조치계획 및 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현장조사 후 재활용 또는 원상복구 처리할 것 유출 지하수 저감 및 활용방안 및 대책수립 강구 <p>[빗물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사용 절약을 위한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빗물 및 유출 지하수 등을 연계활용 단 지내 조경, 화장실,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정 준수하겠음. 실시설계시 반영 하도록 하겠음 사업시행시 별도 협의 사업시행시 강구 하겠음 해당행위시 별도 신고하겠음 사업시행시 검토 하겠음 사업시행시 검토 하겠음 사업시행시 검토 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관련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의견	비고
물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 화단, 녹지대 등의 중앙을 오목형으로 조성하여 빗물 침투가 용이하게 하고, 단지내 포장구간에는 빗물 침투측구 등을 설치하여 물순환 건전화 를 유도할 것 ◦ 市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5 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건축시 빗물시설을 설 치할 것을 권고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시 검토 하겠음 ◦ 본 사업은 도로사 업으로 해당없음 	반영 -
공원녹지과	<p>1.공원·녹지일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광장의 남측과 서측에 완 충녹지의 추가 지정 또는 광 장 내 동일기능의 시설 설치 등 대안검토 ◦ 광장 설치시 완충녹지 동시에 병행 설치 <p>2.산림법 관련 일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관리법 제5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에 의거 관할구청 협의사항임 ◦ 기존산지를 최대한 원형보전 할 수 있도록 계획 할 것 ◦ 표토의 보존 및 재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토지의 관리계획 에 반영하고 이식 가능한 수 목과 기존 시설내의 수목은 이식계획을 수립 반영하여야 함 ◦ 기존녹지(기존수목 및 표토의 현황과 조치계획을 포함)의 보 전 및 녹화의 추진, 녹화되는 토지의 관리계획에 대하여는 관리청과 사전협의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식품부 협의내용(농림지역 내 녹지는 불가)을 감안 향후 광장조 성계획시 검토 ◦ 광장 조성계획시 비용부담 등 협의 를 거쳐 검토 ◦ 향후 관할구청(서 구청)과 협의하겠 음 ◦ 사업시행시 검토 하겠음 ◦ 사업시행시 검토 하겠음 ◦ 사업시행시 검토 하겠음 	부분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관련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의견	비고
서구청	<p>1. 대기환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에 대기오염물질이 주변 정온시설(단독주택)에 영향을 최소화 할 것 ◦ 공사시 기존도로의 연결지점 주변도로에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깨끗하게 유지할 것 ◦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하고 市の 「비산먼지 엄격한 관리 기준」 을 준수 할 것 ◦ 먼지측정기를 설치하고 차량진·출입로에 환경관리 모니터링이 가능한 CCTV를 설치·운영·전송토록 할 것 ◦ 녹지대 대기오염정화수종 식재시 탄소흡수량이 많은 수종을 식재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시 저감방안 검토하겠음 ◦ 사업시행시 검토하겠음 ◦ 사업시행시 검토하겠음 ◦ 사업시행시 검토하겠음 ◦ 사업시행시 검토하겠음 	<p>반영</p> <p>반영</p> <p>반영</p> <p>반영</p> <p>반영</p>
	<p>2. 수환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빗물로 인한 하수도 부담 및 공공수역 오염을 경감토록 설계·시공하고 계획시설(광장) 주변 인접한 하천(검단, 대포천 등)에 토사 및 오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시 검토하겠음 	<p>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폐유(윤활유포함)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유출시 조치계획을 마련 할 것 ◦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은 개발사업현황, 비점오염관리자, 사업부지현황, 시설위치도, 배치도면, 방류수계현황, 강우량현황, 발생가능비점오염원 목록 등을 포함하여 작성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시 검토하겠음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와 연계하여 사업시행시 검토하겠음 	<p>반영</p> <p>반영</p>
	<p>3. 토지환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 처리 할 경우 서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및 소각업체에서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시 검토하겠음 	<p>반영</p>

관련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의견	비고
서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성토 작업시 토양의 유실을 최소화하고 사면안정대책으로 수목을 재이용 식재 등 환경 친화적 방안을 검토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환경성검토와 연계 검토하겠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보조기층용 순환골재를 15% 이상 의무사용, 기초다짐용 및 채움용으로 순환골재를 사용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시 검토하겠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환골재는 우리구 관내 건설 폐기물중간처리업체 순환골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시 검토하겠음 	반영
	<p>4.자연생태환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훼손 수목 중 재이용 가능한 수종은 기존 서식공간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재식생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시 검토하겠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식물, 동물, 조류이동 및 생태 피해를 최소화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환경성검토와 연계 검토하겠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조류의 재유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이고 자연미와 계절감이 있는 녹지환경 조성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시 검토하겠음 	반영
	<p>5.생활환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발생량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환경성검토와 연계 검토하겠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 방음벽 설치 및 저소음·저진동 공법을 적용하고 주요 주행로의 정온시설과 원거리 검토 및 야간시간대 공사를 지양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시 검토하겠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음벽 설치시 적절한 방음벽의 재료와 색채 및 질감을 채택하고 녹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시 검토하겠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해양부의 「친환경적인도로건설지침」을 활용하여 도로를 설치하고 친환경적포장공법을 적용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시 검토하겠음 	반영

관련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의견	비고
서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되는 모든 구조물 등은 경관영향 및 단절을 최소화 방안을 적극 반영하여야함 ◦ 중앙분리대를 조성하여 수목을 식재하는 방안 제시 할 것 6.기타 ◦ 사업구간에 자전거 도로설치 ◦ 기타 관련법에 의거 인·허가를 득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시 검토 하겠음 ◦ 사업시행시 검토 하겠음 ◦ 사업시행시 관련 계획과 관계확인을 거쳐 검토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김포시 건설도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 할 것 ◦ 보도구간 설치 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을 준수 할 것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준수 할 것 ◦ 도로내 각종 표지판 설치시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준수 할 것 ◦ 가·감속차선 계획 확보할 것 ◦ 양촌면 도로연접구간내 자전거 도로 확보, 가로수설치, 가로등 설치할 것 ◦ 보행자 통행로 단절부분의 보도 경계석 낮춤 시공시 장애인 휠체어 이용의 장애가 없도록 하고 경사구간의 미끄럼방지 안전시설을 반영할 것 ◦ 야간 안전을 위해 가로등 설치 계획을 반영하여 시공할 것 (도면첨부하여 별도협의 요함) ◦ 도로표지판의 기초판을 지상에서 보이지 않도록 지표하에 시공하고 매입부분은 볼트캡 설치를 사업에 반영하고 시공할 것 ◦ 연접부 도로교통시설은 도로교통법 및 교통안전시설(표지 포함) 설치·관리 지침에 의거 설계하고 시공시 경찰서 착공 신고 이행할 것 (김포경찰서와 별도 협의 요함) ◦ 김포시 경계부분 연접구간 도로에 대하여는 사전에 긴밀히 협의·협조하여 주민의 피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시 검토 하겠음 ◦ 사업시행시 검토 하겠음 ◦ 관련규정을 준수 하겠음 ◦ 관련규정을 준수 하겠음 ◦ 실시설계시 검토 하겠음 ◦ 실시설계시 검토 하겠음 ◦ 실시설계시 검토 하겠음 ◦ 실시설계시 검토 하겠음 ◦ 실시설계시 검토 하겠음 ◦ 실시설계시 검토 하겠음 ◦ 실시설계시 별도 협의 등 적의 조치 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검토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관련기관 (부서)	협의의견	조치의견	비고
김포시 도시개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전에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할 수 있는 검수자료를 제출하고 결정고시문에 동법 내용을 삽입하여 고시할 것 ◦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후 2년내에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서류를 우리시에 송부하여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규정에 의거 고시하겠음 ◦ 관련규정에 의거 고시후 관계도서를 송부하겠음 	반영 반영
한국전력공사	<p>1.지장송전선로에대한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가지장송전선로(17~24호,7기)이설에 필요한 대관인·허가 및 용지확보를 위한 사항을 도로계획에 포함할 것 -공사비부담: 이설요청자부담 -공사시행자 결정 : 이설 요청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한전에 위탁하는 방안 중 결정 -한전위탁시 소요기간 : 60개월 ◦ 345kV 서인천송전선로 8~15호는 경인운하(인천터미널) 건설과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중화를 추진 중임 <p>2.송전선로 건설관련 협조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로명 : 345kV 포스코-신덕은 송전선로 -345kV서인천 송전선로 지장이설 경과지확보시 수도권매립지부지 잠식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345kV 포스코-신덕은 송전선로 경과지를 동시에 확보하고자 협조 요청 -공사비 부담 : KEPC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매립지 등과 협의를 거쳐 검토하겠음 ◦ 기타 사항은 사업시행시 검토 ◦ 참고하겠음 ◦ 별도의 공간 확보는 토지소유권자가 아니므로 협조가 어렵고 다만, 간접적인 지원은 검토 하겠음 	검토반영 추후검토 - 추후검토

8. 주민 의견청취 현황

- 청취기간 : 2010. 3. 22. ~ 4. 5(14일간)
- 청취방법 : 일간신문 광고(서울신문,우리일보), 시보게재, 게시판 공고
- 청취결과 : 의견없음

9. 관련법 검토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구 분	주 요 내 용
법 제2조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법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 제30조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이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0. 주변여건 검토내용

- 지역내 대형개발사업 구상으로 인한 기반시설 확충 시급한 실정임

- 총 3개 지구 : 180.2k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단신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서구 마전·원당·당하·불로·대곡동 일원 - 면 적 : 18.1km²(인구 230,000명) ○ 검단산업단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서구 오류동 일원 - 면 적 : 2.25km² ○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서구 오류동 일원 - 면 적 : 0.672km²(인구 13,160명)

○ 첨부도면

- 1. 위치도 (별첨1)
-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별첨3)

< 별첨 1 >

위 치 도

